

## 부패행위 신고 안내

### □ 부패행위 신고대상

- **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**
  - “공직자”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공직자”를 말함
  -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(예 : 주택·상사의 임차관련 분쟁,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)
  - 지위·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
  -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, 반사적 이익은 제외
  -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 모의 등이 있어야 함
- **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**
  - “공공기관”이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공공기관”을 말함
  -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
  -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
- **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**

### □ 부패행위 사례

- **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**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)
  -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출장명령서를 작성,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령함
- **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**(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)
  -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·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